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0. . . (제 회)	

사회보장급여의이용·제공및
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
시행령일부개정령안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의 지급 한도를 폐지하고, 수급자격 확인 조사 및 지원대상자 발굴 지원을 위한 연계정보를 추가하며, 2019년 12월 3일 공포된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사회보장정보원의 명칭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변경(안 제17조 및 제26조)

나.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 폐지(안 제27조 제3항)

다. 수급자격 확인을 위한 연계정보에 「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따라 유족이나 관계기관의 장이 국가보훈처장에게 안장, 합장 신청한 대상자 정보 추가(안 별표1)

라. 지원대상자 발굴 지원을 위하여 처리할 수 있는 정보에 「아동수당법」 제4조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대상 아동 중 아동수당을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아동 정보 추가(안 별표2)

마. 법제13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보장기관에 알린 지원대상자의 정보를 위

기가구 발굴에 활용 근거 마련(안 별표2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
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의 제목 “(사회보장정보원에 대한 감독)”을 “(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
대한 감독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사회보장정보원”을 “한국사회보
장정보원”으로 한다.

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사회보장정보원”을 “한국사회보장정보원”으로
한다.

제27조제3항 후단을 삭제한다.

별표 1 제26호 중 “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상의 사망진단 관련 정보”를
“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상의 사망진단 관련 정보, 「국립묘지의 설치
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따라 유족이나 관계기관의 장이 국가보
훈처장에게 안장, 합장 신청한 대상자의 정보”로 한다.

별표 2 제3호가목에 6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표 제5호사목을 아
목으로 하며,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6) 「아동수당법」 제 4조에 따른 아동수당의 지급대상인 아동 중
아동수당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아동의 정보

사.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보장기관에 알린 지원대상자의 가구정보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표1 및 별표2 개정규정은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신고포상금에 관한 적용례)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포상금 지급을 결정한 건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8조제1항제6호 중 "사회보장정보원"을 "한국사회보장정보원"으로 한다.

②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중 "사회보장정보원"을 "한국사회보장정보원"으로 한다.

제7조 중 "사회보장정보원"을 "한국사회보장정보원"으로 한다.

③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 중 "사회보장정보원"을 "한국사회보장정보원"으로 한다.

④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1항 중 "사회보장정보원"을 "한국사회보장정보원"으로 한다.

⑤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조의2제1항제10호 중 "사회보장정보원"을 "한국사회보장정보원"으로 한다.

⑥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의3제5항 중 "사회보장정보원"을 "한국사회보장정보원"으로 한다.

제57조제3항제2호 중 "사회보장정보원"을 "한국사회보장정보원"으로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7조(사회보장정보원에 대한 감독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<u>사회보장정보원</u> 에 대하여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, 사업이나 재산 상황을 검사하는 등 지도·감독을 할 수 있다.	제17조(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대한 감독) ① ----- <u>한국사회보장정보원</u> ----- ----- -----.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26조(업무의 위탁)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<u>사회보장정보원</u> 에 위탁한다.	제26조(업무의 위탁) ----- ----- ----- <u>한국사회보장정보원</u> -----.
1. ~ 6. (생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
제27조(신고포상금 지급의 기준·절차 및 방법 등) ①·② (생략)	제27조(신고포상금 지급의 기준·절차 및 방법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보장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환수를 명한 금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. <u>이 경우 신고인 1명당 연간(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 포상금 지급 한도는 5천만원으로 한다.</u>	③ ----- ----- ----- ----- <u><후단 삭제></u>
④ ~ ⑩ (생략)	④ ~ ⑩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	
연 락 처	(044) 202 - 3143